



제428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최고이자율 적용 예외 삭제〉

■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677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주요내용 검토	3
3. 관계기관의 의견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12. 18.
3. 회 부 일 :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에 있어서 최고이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금전대차계약에서 약자의 지위를 지니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회상규상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항임.

그런데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최고이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 사이에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대출하여 주고 수천 %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금전대차계약에 최고이율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제정 목적과 같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을 꾀함(안 제2조제5항 삭제).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의 사인 간 소액 대차에 대해 최고이자율(연 20%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차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금전대차에 이자율 상한을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 ④ (생략) <u>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된 금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1)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2. 검토의견

현행 최고이자율 규율 체계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으로 이분화되어 있음. 일반 사인 간 비영업적 금전대차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반면,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포함)나 금융기관에 의한 영업적 대부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됨.

「이자제한법」은 대차 원금에 상관없이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는 「대부업법」과 달리, 제2조제5항에서 10만원 미만의 소액 대차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연 20%)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인 간 소규모 거래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²⁾.

최근 청소년 등이 SNS상의 광고를 보고 물품·티켓 구입, 게임비 마련, 도박 자금 명목으로 소액(10만원 내외)의 돈을 빌린 후 단기간에 고율(1주일 이자율 20~50%, 연 이자율 환산 시 1,000% 이상)의 이자와 원금을 갚게 되는 이른바 ‘대리입금’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³⁾

‘대리입금’의 채권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가 아니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

2) 소액대출에 대한 최고이자율 적용 배제는 1998년 1월 폐지된 구(舊)이자제한법의 제정시부터 도입(1962년~: 3만원 미만, 1965년~: 5천원 미만)되었고, 2007년 이자제한법이 다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만원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음.

3) 서울경찰청 보도자료, 서울경찰,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긴급 스쿨벨』 발령, 2024. 5. 1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청소년 여러분! 대리입금·내구제대출 주의하세요!!, 2023. 6. 21.

부업법」으로 이자율 상한 규율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아울러 해석상 10만원을 넘는 대차관계에서 이를 10만원 단위로 끊어서 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탈법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의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10만원 미만의 사인 간 금전대차에도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액 대차를 이용하는 청소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며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현행법 제8조⁵⁾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사인 간, 특히 “대리입금” 등 청소년 간 금전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대되거나,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의 소액 생활단기자금의 융통 가능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대리입금’의 상당 부분은 광고성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업적 대부에 해당하여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⁶⁾을 고

4) 노종천. (2011). 이자제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일본법제와의 비교-. 법학논총, 25, 95-129.

5)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6) 판례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의 판단 기준인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

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참고로, 최근 「대부업법」 개정⁸⁾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며, 이들의 미등록 불법대부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규정 등이 도입되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한편, 해외입법례⁹⁾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원금 규모에 따라 법정

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103. 9. 27., 선고, 2013도8449).

7)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형사처벌 확대 우려의 경우 벌칙 적용의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언론 및 학교 등에서의 집중 홍보를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 대차에 대해서도 영업성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일반적 예방효과가 상당할 수 있고, ‘대리입금’과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인지 여부가 대여 시점에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대의 의견도 제시될 수 있음.

8)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9) 김대규. “최고이자율 규제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기업법연구 37.2 (2023): 129-150.

최고금리를 차등화하고 있고¹⁰⁾,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주급(週給)을 담보로 100~500\$ 수준의 급전을 빌리는 소액 단기 대출인 페이데이론(payday loan) 사업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 상한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¹¹⁾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영업성을 갖는 거래에 대해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대부업법」을 통해 규제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및 소액거래는 이자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대한변호사협회는 10만원 미만 대차거래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현행 제2조제5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 미만의 대차거래에 대해서도 동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형벌조항의 적용 대상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0) 10만엔 미만 연 20%,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 연 18%, 100만엔 이상 연 15%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https://laws.e-gov.go.jp/law/329AC0000000100>)

11) Some states do not have payday lending because the loans are not permitted by the state's law or because payday lenders have decided not to do business at the interest rate and fees permitted in those states. (출처: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 웹사이트 <https://www.consumerfinance.gov/ask-cfpb/what-is-a-payday-loan-en-1567/>)

문 의 처
02)6788-5054